

#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공개에 관한 주요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대철\* · 권헌영\*\*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s of Four Major Countries on Privacy Policy Disclosure

Tae Chul Jung\* · Hun Yeong Kwon\*\*

### ■ Abstract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Keyword : Privacy Policy, Privacy Protection Law, Personal Data, Personal Data Processing, Principles of Privacy Protection

## 1. 서론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없는 정보공유 시대가 되었다. 실제로 2022년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2017년 트래픽의 3배를 초과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2). 특히, 개인이 행하는 디지털 무역의 빈도 증가로 기업이 수집·관리·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교류는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잡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필수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 데이터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과 2023년 2차례 데이터 교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움직임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그 결과 2017년부터 진행된 유럽연합과 GDPR 적정성 평가를 2021년에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괴되는 데이터 라이프사이클(Lifecycle) 동안 데이터를 준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재은, 2022). 그리고 정보주체에게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가 처리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우한솔, 2019).

이렇듯 데이터가 경제, 문화, 사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한 국가 내에서도 데이터의 종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22). 이에 OECD에서는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이용제한의 원칙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6) 처리방침의 공개 원칙 7)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8) 책임의 원칙이라는 프라이버시 8원칙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현지화와 국가 간 이동에서 사생활과 개인정보

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전승재, 권현영, 2019). 또한, 국가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데이터 교류가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전승재, 권현영, 2019).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수준을 연구하는데 그치고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중요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EU, 중국, 그리고 미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 이동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개인정보 처리현황 공개의 중요성 증대

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도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최난설현, 2022). 그러므로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더욱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중 ‘처리방침의 공개 원칙’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표준 기

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각국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공개에 대한 강화 정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1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요성 증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2023년 업무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1>에 보면 2021년 ‘국민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과제(개인정보 처리방침 라벨링), 2022년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과제(업종별 처리방침 표준화), 2023년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과제(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와 같이 매년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투명한 공개와 연관된 과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 처리현황 공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표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추진 과제

2021년	2022년	2023년
국민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전 국민 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기술·신산업 지원 개인정보 활용기반 강화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점검·대응	디지털 기반 사회에 부합한 정보주체 권리 실질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개편에 대응한 리더십 확보
참여형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가명정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혁신 가속화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데이터 시대에 기업의 불확실성 신속 제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기술 개발 지원	사각지대 없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기업의 보호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지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개인정보 규제 전면 혁신
지속성장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

2021년	2022년	2023년
기술개발 투자 및 인재양성	암장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가명정보 활용 성과 창출	글로벌 선진 개인정보 리더십 강화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의 획기적 제고	-	-
개인정보보호 협력·조정 강화	-	-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 증대의 시대에서 사각지대 없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공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공개의 원칙 관련 조항

구분	법 조항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EU GDPR	제5조(개인정보 처리 원칙) 1.(a) 개인정보주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처리는 공개, 투명의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처리 규칙을 공개하며, 처리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미국 CPRA	제3조(목적 및 의도) (B) 기업의 책임 (1) 기업은 개인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사용하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권리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소비자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표 3>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 권고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 처리현황 공개에 대한 정책 강화와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관련 신설 조항

조항	내용
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 평가 및 개선권고) *2023. 9. 15. 시행	<p>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p> <p>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p> <p>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이하 생략)</p>

## 2.2 국경간 데이터 이동 증대에 따른

### 개인정보 처리현황 공개 강화 필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정보의 이동은 글로벌 비즈니스 및 국제무역과 국가 간 협력의 확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박노형, 2023).

다국적 기업은 인사 관련 데이터, 국외 R&D 센터로의 데이터 전송, 제조과정 관리, 사후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일상 및 내부업무를 위해 전 세계 계열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한국무역협회, 2022), 이는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가장 많은 미국-유럽 간 대역폭이 2015년 약 5,000Gbps<sup>1)</sup>에서 2020년 약 400Tbps<sup>2)</sup>로 약 80배 이상 증가한 통계결과가 증명하고 있다(UNCTAD, 2021).

국경간 데이터 이동 증대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확산됨에 따라,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3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이용자 동의 여부 등 절차의 적법성과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확정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이와 관련된 현황조사에서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국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신문, 2023).

한편,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4절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신설이며,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만 적용되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처리위탁·보관에 대한 국외 이전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하는 경우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개정안 제28조의8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이전국가, 시기와 방법, 이전받자의 성명과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정보주체에 알린 경우,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인증 등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가 인정할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김법연, 2021).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국외 이전을 받는 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받은 국가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나 처리위탁·보관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증가에 따른 안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과 노력들이 시행되는 현 시점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공개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Gigabits per second.

2) Terabits per second.

### 2.3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규정 강화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능정보사회로도 불리며,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의 결합을 의미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기계로 하여금 고차원적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김일환, 2020). 이러한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김민우, 김일환, 2021). 특히, 스마트워치, 스마트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의 상용화로 지문, 홍채,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되고 있어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민감정보는 건강,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김강한, 권건보, 2020),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1)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 2) 민감정보의 처리를 법령에서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그러므로 정보주체가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 혹은 사회적 차별과 비난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처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민우, 김일환, 2021).

EU에서도 회원국마다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이한주, 권검보, 김일환, 2018), GDPR에서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엔 민간기관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3) 원칙적으로는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는 금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예외 규정에 제시된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범죄경력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적기관이 수행하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만 활용가능하다.

GDPR 서문(recital) 51조에 따르면 민감정보에 대한 성질이 구체적으로 기본권과 자유와 관련하여 민감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들의 처리 관계는 기본권과 자유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보호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심연우, 2022).

이처럼 민감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 관련된 정보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한 단계 높은 보호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정보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민감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이러한 처리 현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공개에 관한 법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심사를 하고 있다(조용현, 차영균, 2020). 그러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중요성은 단순 고지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4개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1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주된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정확성, 최신성, 투명성 그리고 공개원칙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제공을 위해 사용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사용목적 범위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제공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1조).

민감정보에 있어서는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는 제23조 제3항에 정보주체가 민감정보의 공개여부를 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에서도 국내대리인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의8에서는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 시기 및 방법,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처리방침에 공개했을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이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서는 범죄예방과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국외 이전된 정보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무역 및 개인무역의 증가, 정보통신발전으로 인해 모호해진 국경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금 법제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3.2 EU Privacy Policy에 관한 법제

EU의 GDPR의 경우, EU가 유럽국가연합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국적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처리의 보호가 개인의 기본권리이므로 존중되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회 및 유럽각료이사회의 지침 95/46/EC가 회원국 간에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GDPR의 전문 (6)항에서는 급진적인 기술발전과 세계화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럽 역내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과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TFEU의 제 16조 (2)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러한 GDPR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국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됨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GDPR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법제와 같은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각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GDPR을 자국법에 편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과 범위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유럽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오히려 개인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R 전문 (10)항에서는 회원국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이행지침 95/46/EC와 연계하여, 특별 규정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별 규정을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GDPR을 따르도록 하되, 개인정보 처

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회원국의 법률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회원국의 재량을 보장하고 있다.

EU의 GDPR에서 Privacy Policy와 관련된 조항은 제30조(처리활동의 기록)<sup>4)</sup>로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두 개인정보처리 주체별 Privacy Policy 공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sup>5)</sup>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함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사항도 Privacy Policy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3.3 중국 개인정보 처리규칙에 대한 법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2장 개인정보처리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

<표 2>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제 1장 제7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는 공개, 투명의 원칙을 준수하고 처리규칙을 공개하며 처리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 제17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전에, 알기 쉬운 언어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제17조제1항의 규정 사항을 고지하며, 처리 규칙은 공개되어야 하고 열람 및 보관이 편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또한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에게 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공개 기준과 범위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우리나라 개

인정보 보호법과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제39조에서는 국외 개인정보 제공 시 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 제40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인터넷 정보부처 기구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 전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3) 국가인터넷정보부처가 제정한 표준 계약에 따라 역외의 접수 측과 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인터넷정보부처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이는 중국의 공산주의 이념이 반영된 법제로 보인다. 제38조의 내용은 결국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개입하여 관리된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간 교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국가가 발전하는 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김정애, 2020).

### 3.4 미국 Privacy Policy에 관한 법제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개인정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다루고 있어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연방정부 차원의 법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아동·의료·금융 등 특정 분야별로 분산되어 개별 법률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경재웅, 2023).

그리고 미국 개인정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주법으로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 및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법(The California Privacy Act) 그리고 일리노이 생체인식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법(The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등이 존재한다(김민우, 김일환, 2021). 그 중 미국에서 개인정보와

4) Article 30 Records of processing activities.

5) Article 12 Transpar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odalitie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관련된 가장 오래된 법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은 1972년에 제정된 CCPA이다.

CCPA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개원칙을 따르고 있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이나 수집할 때 처리방침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CCPA는 개인정보를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기업이나 제3자에게 판매해 배포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Do Not Sell My Data’라는 명백한 링크가 제공하고 있다(안이나, 2022).

2023년 1월 시행된 CPRA는 CCPA를 수정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큰 틀은 동일하며, CPRA §1798.130(a).(5)에서 Privacy Policy의 항목과 온라인 계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CPRA에서는 §1798.135 개정을 통해 위에서 기술한 개인정보 판매금지(Do Not Sell My Data) 이외에 민감정보 사용 제한(Limit the Use of My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명백한 링크 제공을 추가하였다.

#### 4. 각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에 대한 비교분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념과 문화, 법성격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EU는 연합기구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보다는 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외 이전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사항을 Privacy Policy에 명시하는 등 국외 이전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 명확성, 투명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규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법률과 유사하지만, 국외 이전되는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

입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시법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감정보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Privacy Policy에 있어서도 12개월에 1회 이상 업데이트하도록 강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에 필수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국가별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필수 항목

구분	법률 상 필수 항목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 기간</li> <l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에 관한 사항</li> <li>·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li> <li>·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li> <l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관련 부서 정보</li> <li>·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관련 사항</li> <li>·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li> <li>·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li> <li>·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전 처리방침)</li> </ul>
EU GD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자 정보</li> <li>· 개인정보보호담당관(DPO)의 이름/연락처</li> <li>·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i> <li>· 국외 이전 수령인의 범주</li> <li>· 국외 이전의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li> <li>· 개인정보 삭제 예상 기한</li> <li>· 기술적 및 관리적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li> </ul>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 또는 신분, 연락처</li> <li>·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i> <li>·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li> <li>·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li> <li>·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존 기한</li> <li>·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및 절차</li> <li>· 개인정보처리 규칙 변경 사항</li> <li>· 합병, 분립, 해산, 파산 등의 원인에 의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사항</li> <li>·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li> <li>· 민감정보 처리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li> <li>· 개인정보 역의 이전에 관한 사항</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개월 내 발생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li> </ul>



구분	법률 상 필수 항목
CP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수집 출처 및 목적, 보관기간</li> <li>· 12개월 내 발생한 공개(제공)된 개인정보 항목, 공개(제공)된 제3자 정보, 공개(제공)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li> <li>· 12개월 내 발생한 판매된 개인정보 항목, 옵트아웃 권리 행사 방법<sup>6)</sup>, 판매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li> <li>· 소비자 권리의 종류(공개권, 시정/삭제권, 판매거부권)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li> <li>· 민감정보 활용의 경우, 민감정보 활용 제한 내용과 민감정보 활용 제한 방법<sup>7)</sup></li> </ul>

여기서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은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이 EU와 중국은 필수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감정보에 관한 사항을 중국과 미국에서는 필수 사항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4개국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제정의미인 개인의 권익보호를 4개국 모두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시사점

앞서 살펴본 각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공개원칙과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내용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각국의 적용범위 및 처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전승재, 권현영, 2019),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가 국가 간 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각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원칙과 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이전관련 사항에 대한 필수 공개가 필요하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에 관한 법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국가와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중국의 법에서는 공개 범주와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라는 점과 EU의 GDPR에서는 국가 간 이동할 때에도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무역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GDPR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 GDPR의 제43조에 제시된 인증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제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어서 GDPR은 국제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한겨레, 2021).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GDPR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유럽연합과 적정성 협의를 시작하여 최근 GDPR 적정성 심사에 최종 통과하기도 했다(한겨레,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국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다르므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서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특히, GDPR은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을 일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국가가 개입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하고 처리기준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GDPR 6항에 언급된 것처럼 필요에 따라 일부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법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한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을 필수로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외 이전에

6) 개인정보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 금지권 내용과 “Do not sell or Share my personal information” 페이지 링크 제공.  
7) “Limit the Use of My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페이지 링크 제공.

관련 조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국외 이전 조항

조항	내용
제39조의12 (국의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2023. 9. 15. 삭제	① <b>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b> 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b>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b> (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 <b>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b>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b>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b>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이하 생략)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2023. 9. 15. 시행	① <b>개인정보처리자</b> 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b>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b>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5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항	내용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이하 생략)

<표 5>와 같이 개정 직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한정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도 필수가 아닌 동의를 대체하는 수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2023. 9. 15. 시행)에 신설된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은 확대되었을 뿐,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이 필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표 5>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고지해야할 사항인 제28조의8제2항제1호에서 제5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 ‘EU GDPR 적정성 결정’과 ‘APEC CBPR 인증’과 같이 안전한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이 증시되고, EU GDPR에서 ‘국외 이전의 적절한 안전조치 정보’를 필수공개하는 것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월 10일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보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서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무역파트너들과 적정성 결정에 관한 논의를 우선 진행할 것임을 밝혔으며(박노형, 2022), 이후 5년 가까운 시간의 협상을 거쳐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었다. EU 적정성 결정으로 한국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박노형, 2022).

또한, APEC 회원국 간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자상거래 운영그룹(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ECSG)은 2004년 11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준칙(Privacy Framework)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CBPR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양지선, 2020). 이후 2011년 CBPR 인증제가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5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APEC CBPR 인증제도를 공식 시행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허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안전조치에 대한 국제적 협의와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EU 적정성 결정과 APEC CBPR 인증 획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용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안전조치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사항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감정보 처리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상술한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능정보사회로 지능정보기술 발전으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증가였으며, 정보주체는 자신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중국과 미국의 경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사항과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에 작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과 함께 정보주체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가 민감정보 활용 제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내 민감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강조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표 6>과 같이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에 사항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시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과 ‘가명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되는 경우 필수로 작성하도록 추가하였다.

<표 6>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조항 개정사항

조항	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023. 9. 15. 시행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 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li> <li>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li> <li>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li> </ol> <p>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p> <p><b>3의3.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li> </ol> <p><b>4의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li> <li>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li> <li>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li> </ol> <p>(이하 생략)</p>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3월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사항을 직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주요 처리 사항을 기호로 표시하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을 제시하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그림 1] 라벨링 작성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

그러나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는 권고 사항이며,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사항에도 민감정보의 공개에 대한 정보주체의 선택만 제시하였을 뿐,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미국 CPRA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내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EU, 중국 그리고 미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공개원칙과 처리방침에 관한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데이터 이동에 따른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OECD에서 제시한 프라이버시 8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많아지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GDPR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한 규범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문 제7조는 EU 역내의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강달진, 2020). 이러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EU GDPR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내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해서는 대부분 유사하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교적 최근에 법제를 제·개정하는 등의 움직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국외 이전과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치관과 이념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또한, 미국 CPRA는 기존 CCPA의 §1798.135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민감정보 처리 시 민감정보 활용 제한 내용과 민감정보 활용 제한 방법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정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법제를 제·개정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시행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원칙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sup>8)</sup>하여 정보주체가 보다 정확하고 쉽게 개인정보처리에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2023. 9. 15. 시행>.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국경없는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서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 공개 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중국·미국과 같이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재검토하여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에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공개원칙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된 법제와 항목을 분석하여 정보주체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3, 5-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20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20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 업무계획”, 20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2021.
- 경제용,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연세법학*, 제41호, 2023, 539-568.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 미국,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
- 김강한, 권건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국의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31권 3호, 2020, 121-173.
- 김민우,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민감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서울법학*, 제29권 2호, 2021, 77-116.
- 김법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안의 주요내용”,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 2021, 98-105.
- 김유정,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제32호, 2020, 37-92.
- 김정애, “중국 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해외이전에 관한 법적보호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2호, 2020, 171-199.
- 박도형, “EU 적정성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보완규정의 법적 분석”, *고려법학*, 제106호, 2022, 395-435.
- 박도형,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의 분석”, *고려법학*, 제109호, 2023, 170-201.
- 손영화, 송수진,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사법학회*, 제26권 1호, 2019, 413-452.
- 심연우, “유럽연합(EU)의 민감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방향성에 대한 소고”, *경쟁법연구*, 제46권, 2022, 385-410.
- 안이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양지선, “디지털 교역 규범 도입의 법적 쟁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점 모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우한솔, “국내·외 주요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이용자권리 비교”,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상우, “중국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신(新)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한중법학회*, 제45호, 2021, 333-361.
- 이한주, 권건보,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2018, 1-40.
- 전승재, 권현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5호, 2019, 167-197.
- 전승재, 권현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정보법학*, 제22호, 2018, 183-218.
- 전자신문, “국내 5000개 앱 중 696개(13.9%), 개인정보 국외이전…“전쟁중 러시아도 포함””, 2023.02.20., Available at <https://www.etnews.com/20230220000171>.
- 정재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제15호, 2022, 134-143.
- 조용현, 차영균, “딥러닝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기법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호, 2020, 305-312.
- 최난설현,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경제법연구*, 제21호, 2022, 225-249.
- 최창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관리 기준 비교 및 개선안 연구 :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한겨레, “‘유럽 개인정보법’ 적정성 심사 통과…한-EU 데이터교류 늘어날 듯”, 2021.12.17.,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23792.html>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제12호, 2022.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요국 국가 간 데이터 이동 규제 정책의 영향과 국제 공조 방안”,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제10호, 2022.
- 강달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77호, 2020, 7-50.
- UNCTAD, “DIGITAL ECONOMY REPORT 2021”.

## ◆ About the Authors ◆



**정 태 철 (secret\_mails@hanmail.net)**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중이다. 제조/물류/온라인서비스 기업 및 대학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법제 및 정책 등이다.



**권 현 영 (khy0@korea.ac.kr)**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통신,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및 안보, 전자정부, 정보화, 사이버윤리 등이다. 한국인터넷윤리 학회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IT 서비스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